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33

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 박수영·정성국·김장겸

김기현 • 진종오 • 박성훈

강승규 · 김대식 · 이인선

권성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 게임산업 수출액은 연간 약 12조원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음.

이러한 게임산업을 뒷받침하는 이스포츠는 이스포츠월드컵 등 전세계적인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고,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도입 후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2025년부터 이스포츠올림픽 개최를 결정하는 등 위상이 높아졌음.

이에 미국, 중국, 사우디 등 주요국들은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·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민간부 문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 및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 적 지원이 부족해 연이은 이스포츠 구단 해체, 열악한 선수 처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 대회 개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, 구단, 선수단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 종목의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%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. (안 제104조의34 신설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4조의34(이스포츠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(내국법인이 만든 게임의 종목으로 한정한다)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경기대회(이하 이 조에서 "이스포츠대회"라 한다)를 운영(이스포츠대회의 개최, 지원, 홍보 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-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스포츠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04 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운영비용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04조의34(이스포츠대회 운영
	기업에 대한 과세특례) ①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
	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
	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선
	정된 이스포츠의 종목(내국법
	인이 만든 게임의 종목으로 한
	정한다)과 관련하여 같은 법
	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
	포츠의 경기대회(이하 이 조에
	서 "이스포츠대회"라 한다)를
	운영(이스포츠대회의 개최, 지
	원, 홍보 등을 말한다. 이하 이
	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20
	<u>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</u>
	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
	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
	<u>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</u>
	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
	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
	인세에서 공제한다.
	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
	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 ③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 계

 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